

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의한 전기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전기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

를 지휘 감독한다.

-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전기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68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규정과 제98조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 추진경위 및 일정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공포: 법률 제5,784호 ('99. 2. 5)
-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53호('99. 2. 22)
- 시행령 개정 공포: 대통령령 제16,560호 ('99. 9. 30)
- 시행규칙 개정 공포: '99. 10. 10 예정

■ 주요내용

-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중 전력용량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함(영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한 감리를 그 소속 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환경관리공단·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추가함(영 제18조제4항)
-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함(영 제29조)
-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확보인원을 축소하고 사무실의 확보에 관한 기준을 폐지함(영 별표4 및 별표5)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대 중 인

1999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 종 필

국무위원 정 덕 구

산업자원부장관

◎ 대통령령 제16,560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전력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중 “법 제9조”를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로 한다.

제4조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
관”으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
인협회(이하 “한국전력기술인협회”라 한다)”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
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
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력기술인단체

제11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기사 1급”을 “기사”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사2급”을 “산업기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전력시설물의
설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는”을 “전력시설물의 설
계도서는”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표준설계도서”를 “표준설계도서 또는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로
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만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건
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의 전력시설물은 이를 제외한다.

제18조제4항에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중 “일반전

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5의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의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5의4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제20조의 제목중 “대상 등”을 “제외대상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공급규정”을 “공급약관”
으로 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제29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
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
관”으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산업자원부장
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
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제29조 제3항중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전력기
술인단체”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
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전력기술인단체”로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제2항, 제9조제
3항, 제10조제2항, 제18호제1항제7호·제2항, 제23
조제14호, 제25조, 제27조제3항·제4항 본문·동항
단서 및 제30조제5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 본문, 제22조제3항 전단·제4항,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동항 후단·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

구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종 류	발송배전 전기용융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 기 전 기	산업기사 전기공사	기능사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별표 1 제2호가목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호나목의 표의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기준란중 “기사 1급”을 각각 “기사”로, “기사 2급”을 각각 “산업기사”로 하며, 동표의 중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기준란중 “기사 1급”을 “기사”로,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하고, 동란의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를 삭제하며, 동란의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을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으로 하고, 동표의 초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기준란중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하며, 동란의 “○기능사 1급 이상(다기능기술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를 삭제하고, 동란의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을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으로 하며, 동표의 비고 제1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특급감리원 및 고급감리원의 국가기술자격기준란중 “기사 1급”을 각각 “기사”로, “기사 2급”을 각각 “산업기사”로 하고, 동표의 중급감리원의 국가기술자격기준란중 “기사 1급”을 “기사”로,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하며, 동란의 “○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를 삭제하고, 동란의 “기능사 2급”을 “기능사 이상”으로 하며, 동표의 초급감리원의 국가기술자격기준란중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하고, 동란의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를 삭제하며, 동란의 “기능사 2급”을 “기능사 이상”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2호 및 제3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비고 제2호중 “기능사 2급”을 “기능사”로 하며, 동표의 비고 제4호중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전력기술인단체”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5호중 “기술인력·사무실”을 “기술인력”으로 하며, 동표의 비고 제6호중 “사무실 및 자본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종 류	등 록 기 준		영업범위
	기술인력	자 본 금	
종합설계업	전기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1억원 이상 (전력기술인 단체 출자증권 200좌포함)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전 문 설 계 업	1종	전기분야 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2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일반용전기설 비의 설계도 서의 작성

별표 5 제1호의 종합감리업의 기술인력란중 “10인 이상의 감리원”을 “8인 이상의 감리원”으로 하고, 동호의 전문감리업의 기술인력란중 “3인 이상의 감리원”을 “2인 이상의 감리원”으로 하며, 동표의 사무실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4호 및 제5호중 “기술인력·사무실”을 각각 “기술인력”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